

의안번호	제 84 호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자	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31일
발 의 자 : 박형용, 박상돈,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최경천,
황규철

1.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 9. 21.)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 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안 제4조)
 - 의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부의장 : 위촉직 위원 중 의장 지명
- 다. 지역혁신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분과협의회 설치·운영 (안 제7조)
- 라. 지역혁신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
- 마.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수립, 포럼·토론회 운영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 설치 (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52 호
- 라. 협의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혁신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충청북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분과협의회) ① 도지사는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공공혁신·일자리 분야
2. 교육·복지·환경 분야
3. 문화·관광 분야
4. 도시·농촌·균형발전 분야
5. 산업·경제·과학기술 분야

② 분과협의회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지역혁신기관,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분과협의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협의회 의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 회의는 분과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⑤ 분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협의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협의회 간사는 제1항 각 호의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 및 분과협의회 의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혁신연구회) ① 도지사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과 혁신 분위기 확산, 지역 혁신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수립,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회의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시·도 협회의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8.>

② 시·도협회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회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 9. 18.>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시·도협회의회의 장은 시·도협회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9. 18.>

⑥ 시·도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8.>

⑦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협회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

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회의회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9. 18.>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의 산·학·연·관·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감과 협력의 장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2019년도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사업 정부예산안” 통지에 따라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국비 50%, 도비 50% 매칭에 따라 비용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10조(조사·연구), 제12조(수당 등)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 나. 추계의 전제 : 협의회 수당, 사무관리비,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 다. 추 계 결 과 : 19년~23년까지 총 856,000천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856,000	171,200	171,200	171,200	171,200	171,200
운영비	456,000	91,200	91,200	91,200	91,200	91,200
연구개발비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매년 국비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작성자 : 정책기획관 이재영